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연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265

발의연월일: 2022. 11. 16.

발 의 자:최연숙・양정숙・양향자

윤두현 • 이태규 • 임병헌

정경희 · 정우택 · 정찬민

허은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 인정 여부, 활동지원등급등이 표시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있음.

그런데 동 결정통지서에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의 기초가 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(조사항목 문항별 산정 점수)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간에 정보공개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참고로 독일, 프랑스, 미국 등 주요국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공개정보 대상으로 하고 있음.

이에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상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 사항목별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 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제1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종합조사"를 "종합조사(이하 "서비스 지원 종합조사" 라 한다)"로 한다.

제1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1항제 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를 신청인에게 보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)	제7조(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)
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	①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	
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6조	
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	
때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	
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<u>종</u>	<u>&</u>
<u>합조사</u> 를 실시하여야 한다.	합조사(이하"서비스 지원 종합
	<u>조사"라 한다)</u>
제11조(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	제11조(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
지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	ス]) ①
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	
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	
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	
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	
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	
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	
보내고, 그 내용을 제31조제3	
항, 제38조제2항 및 「장애인복	
지법」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	
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의2.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

2. ~ 6. (생 략)

②・③ (생 략)

조사항목별 결과

2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